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1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김우영 · 이개호
양부남 · 주철현 · 김문수
이성윤 · 문정복 · 최혁진
장경태 · 박지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중한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, 박물관 · 미술관 · 도서관 · 문학관을 증 · 개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은 건축물의 증 · 개축 및 이전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.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화재에 특히 취약하고,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.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가 있습니다.

이에 도서관, 문학관, 박물관,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,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. 문화유산의 안전성과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29조제1항).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특정소방대상물 중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
2. 특정소방대상물 중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 - 가.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
 - 나.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
 - 다. 냉동창고, 냉장창고 또는 냉동·냉장창고
3. 「도서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
4. 「문학진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
5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도서관, 박물관, 박물관 및 미술관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u><신 설></u>	<u>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</u> <u>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</u> <u>천제곱미터 이상인 것</u>
<u><신 설></u>	2. <u>특정소방대상물 중 신축·증</u> <u>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</u> <u>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</u> <u>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</u> <u>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</u> <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</u> <u>가.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</u> <u>이상인 것</u> <u>나.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</u> <u>상인 것</u> <u>다. 냉동창고, 냉장창고 또는</u> <u>냉동·냉장창고</u>
<u><신 설></u>	3. 「<u>도서관법</u>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
<u><신 설></u>	4. 「<u>문학진흥법</u>」 제2조제5호 에 따른 문학관
<u><신 설></u>	5. 「<u>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</u> <u>법</u>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